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자치경찰사무와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조직및
운영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청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간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도모하고 상호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시·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간 ‘자치경찰 정책협의체’를 신설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전국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(자치경찰 정책협의체) ① 경찰청과 위원장협의회 간의 효율적인
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(이하 “정책협의체”라 한다)
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정책협의체의 조직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위
원장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1조(자치경찰 정책협의체) ①</u> <u>경찰청과 위원장협의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(이하 “정책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<u>② 정책협의체의 조직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과 위원장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경찰청 자치경찰과	
연 락 처	(02) 3150 - 0664